『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펜테리움』

하이아트

금강주택

펜테리움

2019. 03. 20

수　　신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서울시청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양원PM팀

제　　목 :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의 건

---

1. 귀 청(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파트 신규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공급 대상자 배정을 요청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 공공주택지구 C-2블록
- 세대수 : 총 공급 490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세대
- 견본주택 오픈일 : 2019. 03. 29 (금)
- 특별공급 신청일 : 2019. 04. 02 (화) 08:00~17:30
- 신청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한 인터넷 청약 단,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없는 자는 견본주택 방문 청약 가능(10:00~14:00)

나. 업무 협조 사항

- **특별공급 대상자 통보**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반영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대상자 배정 회신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6-9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M/H
  회 신 일 : 2019. 04. 01 (월)
  연 락 처 : 1600-8874
  담 당 자 : 권상택 과장(02-3468-7746)
  회신메일 : dynamicleo@kkapt.co.kr

첨부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끝.

株式會社 금강주택 代表理事

시　　행 : 하이아트 제2019-062호
㉾0619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21층 (대치동, 금강타워)
전화 (02)3468-7746 / 전송 (02)3468-7306 / www.kkapt.co.kr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 공공주택지구 C-2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총 5개동, 총 490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자, 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 군인 등)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참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① 청약예금 :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14호까지 및 제36조제1호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 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대상세대

(단 위: ㎡/ 세대)

구분		배정 세대수			예비추천 세대수		
		79타입	84타입	소 계	79타입	84타입	소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자	-	4	4	-	3	3
	철거민	-	13	13	-	10	10
	서울특별시 장애인	1	4	5	-	3	3
	인천광역시 장애인	-	3	3	-	2	2
	경기도 장애인	-	3	3	-	2	2
	국가유공자 외(보훈처)	2	9	11	1	7	8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국방부)	1	4	5	-	3	3
	중소기업근로자	1	4	5	-	3	3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호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이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릅니다.
- **신청 주택형의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해당기관을 정한 후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해당기관의 우선순위가 없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8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8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